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신청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피고 성대는 석명 준비명령 답변서를 제출기한(9월 15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피고의 연기신청은

석명준비명령 사항들 중 많은 것들이, 원고, 피고가 동시에 석명해야 할 것으로 서로간 상대방의 답변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해야 하는 필연성이 있으므로 수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에 의하여, 피고 성대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각하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위 원고 김명호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